

2026년 「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」 모집공고

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·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기업의 제품·기술 홍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,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3월 3일
(재)평택산업진흥원장

01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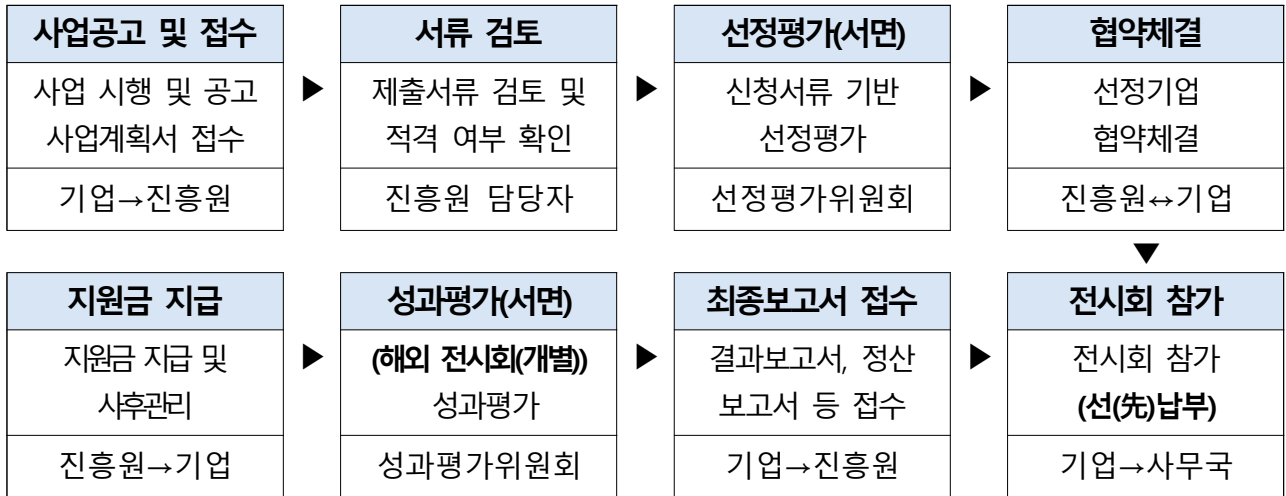
- 사업명 : 2026년 「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」
-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 ~ 2026년 11월 30일
- 지원대상 :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
 -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인 중소기업
 - ※ 본사, 연구소,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,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불가
 -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 - ※ 단순 유통, 숙박 등의 업종 지원 불가
- 지원내용 : 국내 전시회(공동관) / 해외 전시회(개별) 참가 지원
 - 전시회 참가비, 장치비, 홍보비 등 지원
- 지원규모 : 총 25개사 내외

구분	전시회명	모집규모	지원한도
국내 전시회 (공동관) 지원	KES 2026(한국전자전)	20개사	기업당 4백만원
	G-Fair Korea 2026(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)	내외	
해외 전시회 (개별) 지원	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	5개사 내외	기업당 10백만원

※ 상기 유형 중 1개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

※ 모집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규모를 일부 조정하거나 공동관을 변경하여 구성할 수 있음

□ 추진절차



※ 위 내용은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02 세부 지원내용

① 국내 전시회(공동관) 지원

□ 지원규모 : 총 20개사 내외

□ 지원금액 : 기업당 최대 4백만원 이내

- ※ 1. 지원금 및 지원 검수는 예산 범위 내 변동될 수 있음
- 2. 추가비용 발생 시 기업 자부담

□ 지원방식 : 전시회 참가 비용 선(先) 지출(완납) 이후, 후(後) 지원금 지급

□ 지원내용 : 국내 전시회(공동관) 참가 비용 한도 내 지원 ※ 부가가치세(VAT) 제외

○ KES 2026(한국전자전), G-Fair 2026(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) 중 1개 선택

구 분	KES 2026	G-Fair Korea 2026
행 사 명	제57회 한국전자전	제29회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
개최기간	2026.10.13.~10.16.(4일간)	2026.10.29.~10.31.(3일간)
개최장소	서울 코엑스(COEX) A,B홀	일산 KINTEX 제1전시장 4,5홀
주최/주관	산업통상자원부/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	경기도/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운영규모	500개사 1,100부스	500개사 600부스
전시품목	전자부품소재, AX, 모빌리티, 로보틱스, 디지털 헬스, ESG 등	생활용품, 식품, 뷰티.패션, 건강.레저, 테크 등

※ 모집 현황에 따라 기업의 업종, 수요 및 예산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검토 후 참가 전시회를 조정.변경할 수 있음

□ 지원항목 및 세부내용

지원항목	세부내역	지원비율
참가비	부스 임차비	100%
장치비	전시회 운영에 필요한 장치비	100%
홍보비	전시회 관련 홍보물 제작비	80%

※ 전기료, 통신료 등 부대시설 사용료 및 현지 체재비는 지원하지 않음

② 해외 전시회(개별) 지원

□ 지원규모 : 총 5개사 내외

□ 지원금액 :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

- ※ 1. 지원금 및 지원 검수는 예산 범위 내 변동될 수 있음
- 2. 추가비용 발생 시 기업 자부담

□ 지원방식

○ 선정기업이 전시회 참가 비용을 선(先) 지출(완납)하고 전시회에 참가

※ '26.1.1. ~ '26.10.31. 내 개최된 해외 전시회(박람회)에 한함

○ 전시회 참가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성과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를 실시하고,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후(後) 지급

□ 지원내용 : 해외 전시회(개별) 참가 비용 한도 내 지원 ※ 부가가치세(VAT) 제외

□ 지원항목 및 세부내용

지원항목	세부내역	지원비율
참가비	부스 임차비	100%
장치비	전시회 운영에 필요한 장치비	100%
운송비	편도(수출) 해상·항공 전시물품 운송비	80%
홍보비	전시회 관련 홍보물 제작비	80%
통역비	전시회 기간 중 부스 운영을 위한 통역비	50%

※ 전기료, 통신료 등 부대시설 사용료 및 현지 체재비는 지원하지 않음

□ 서류검토

- 제출 서류 기반 적정성 및 자격요건, 누락사항 등 사업담당자 검토
- 제출 서류가 미흡한 경우, 보완 요청 가능

□ 선정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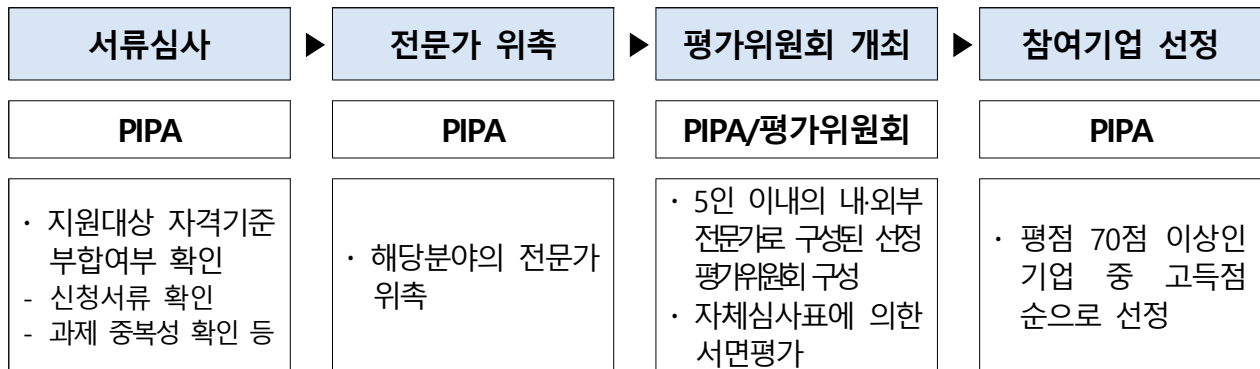
- 5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 위원회에서 기업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서면평가 진행
- 평균 점수 70점 이상을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
-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의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

□ 평가기준

평가항목	세부내용	배점
적정성(45점)	○ 전시물품과 전시회의 적합성	25점
	○ 참가목적 및 필요성	20점
경쟁력(35점)	○ 제품·서비스·기술의 우수성	20점
	○ 국내외 매출, 수출 실적	15점
기대효과(20점)	○ 판로개척 계획 및 성과활용 계획	20점
합계		100점

※ 위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선정절차



※ 전년도 참여기업의 경우, 신규기업 참여기회 확대 및 사업 수혜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평가 시 총점에서 5점이 차감될 수 있음

04

신청 및 접수

□ 사업신청

- 신청기간 : **공고일로부터 2026. 4. 16.(목) 15:00 까지**
- 신청방법 : ‘평택기업지원시스템’ 홈페이지(pipabiz.or.kr/icu) 온라인 접수
- 문의처 : (재)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(031-8029-9348)
- 제출서류 : 업로드 시 압축해서 업로드(파일 번호 기재)

번호	필수 제출서류	비고
1	신청서 및 신청내역	붙임 1
2	개인정보활용동의서	붙임 2
3	청렴이행 서약서	붙임 3
4	사업자등록증	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함께 제출 ※ 말소사항 제외 제출(현재 유효사항만 포함)
5	중소기업확인서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급
6	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	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온라인 발급
7	지방세·국세 납입증명서	(국세)국세청 홈택스/(지방세)정부24 온라인 발급
8	최근 2년 재무제표 (‘24년~’25년)	(재무제표 발급 전)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(업력 1년 미만업체)매출실적확인서 제출
번호	기타 제출서류(보유 시)	비고
9	공장등록증명서	정부24 온라인 발급
10	제품 홍보물	브로슈어, 카달로그, 리플렛 등
11	국내·해외 특허 및 인증	KS, ISO, CE, FCC, UL 등 ※ 유효기간 확인 必
12	지정서	수출유망중소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 등

※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서류만 인정

□ 유의사항

-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본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중도 포기 또는 불성실 이행시 향후 평택 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타 기관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신청·선정 중인 기업은 중복지원이 제한될수 있음
- 전년도 동일사업 참여기업은 선정평가 시 감점이 적용될 수 있음
- 본 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(담당자 이메일, 구두 공지사항)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허위·부정한 방법 또는 같은 건에 대해 타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
- 기업 수요, 운영상황 등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
-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결과를 별도 안내하지 않음

□ 지원제외

- 당해연도 진흥원 지원사업에 3개 이상 선정된 기업
- 중견기업 및 대기업
- 무역 및 수출대행업체, 단순 유통, 도·소매 업체, 타사 명의 참가
- 휴,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정부, 지자체,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
- 지원금 정산 이전에 타 지자체로 이전한 기업
- 자사 제품이 아닌 타 사 제품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
- 자사 명의를 아닌 협회,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한 업체
- 선정기업의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하거나 사업자 상 주소가 선정업체가 아닌 경우
- 정부, 지자체,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
- 신청일 기준, 국세·지방세, 세외수입 체납 기업(완납시 지원 가능)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
- 제출서류 작성·구비가 불성실하거나 마감기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
-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산정 시 부가세와 송금 수수료 등은 지원 불가
- 프리랜서, 개인 거래, 현금 거래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(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 제출)
-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비용
- 이외 선정평가 위원회 결과 진흥원 사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【붙임 1】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

지원제외 업종 총괄표

업 종	품목코드	해 당 업 종
제조업	33402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	46102中	주류, 담배 중개업
	46109中	골동품, 귀금속 중개업
	46209中	일담배 도매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
	46416中	모피제품 도매업(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)
	46463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
	47640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
	47859中	성인용품 판매점
	47911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, 성인용품도소매업
음식점 및 주점업	56211~2	일반(무도)유흥 주점업
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	58122中	경마, 경륜,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	5821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	63999中	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, 게임아바타중개업
금융 및 보험업	64 ~ 66	금융 및 보험업, 다만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 대리 및 중개업(66202)은 제외
부동산업	68	부동산업,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(682)은 제외
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	69390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전문서비스업	71531中	기획부동산업*
사업지원 서비스업	75330中	흥신소
	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	75999中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운영업
	91121	골프장 운영업
	9122中	성인용 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	91249	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
	91291	무도장 운영업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2中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	96992	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
	96999中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
【붙임 2】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

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

구 분	제재 및 환수 사유	제재 및 환수기준	
		참여제한	지원금 환수
부정수급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일·유사사업으로 진흥원 및 타 정부지원 사업으로 부정수급 받은 경우(중복수혜)	5년	전액 환수
중단·실패	<input type="checkbox"/>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, 실패한 경우	3년	전액 환수
	<input type="checkbox"/> 중단,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(사망 등)	면제	집행잔액 환수
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기업(위탁기관) 부도·폐업으로 중단, 실패한 경우(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)	1년	집행잔액 환수
	<input type="checkbox"/>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		
	<input type="checkbox"/>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	1년 / 면제	전액 환수
포기	<input type="checkbox"/>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증빙 제출 필요	면제	전액 환수
	<input type="checkbox"/> 부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	1년	전액 환수
사업비 집행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	5년	전액 환수
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(사업 종료이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)		
	<input type="checkbox"/>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, 편취한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의로 사업 외 타 용도로 유용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	5년 / 2년	전액 환수 / 해당금액 환수
	<input type="checkbox"/> 단순 착오, 매뉴얼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* 사업기간 이내인 경우, 해당금액 환수 후 사업비 사용기준 범위 내에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	경고	해당금액 환수
	<input type="checkbox"/> 협약기간 종료이후 단순 착오, 매뉴얼 미숙지 등으로 지원금을 사업 외로 집행한 경우	경고	해당금액 환수
협약 위배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 결과물을 허위로 제출·보고한 경우	5년	전액 환수
	<input type="checkbox"/>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	2년	해당금액 환수
	<input type="checkbox"/>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조사 등 추적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	1년	해당 없음
	<input type="checkbox"/> 진흥원 승인(통보)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	경고	해당금액 환수
성실 위반	<input type="checkbox"/>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는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	경고	해당 없음

- *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- *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
- * 연간 경고 2회 = 참여제한 1년 ※ 경고누적은 당해연도에 한함
- * 사업수행 중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기업의 경우,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참여를 제한 <신설 2021.03.04.>
- *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
-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